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926

발의연월일: 2022. 10. 26.

발 의 자: 안호영·김승남·김홍걸

소병훈 · 신정훈 · 양정숙

위성곤 • 윤미향 • 윤재갑

윤준병 • 정춘숙 • 주철현

한병도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이하 "마을회등")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어 마을회등이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과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마을회등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그 밖에 마을회등의 주민세를 각각 면제하도록 하여 주민의 자치와 복지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마을회등의 주민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선박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공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주민자치 강화를 위해서는 마을회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이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마을회등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하여 부동산과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마을회등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

제하는 등 지방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2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 장하려는 것임(안 제90조).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2022 년 12월 31일"을 각각 "2032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0조(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제90조(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	①
회 등 주민공동체(이하 "마을	
회등"이라 한다)의 주민 공동	
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u>2022</u>	<u>2032</u>
<u>년 12월 31일</u> 까지 면제한다. 다	<u>년 12월 31일</u>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	
징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마을회등이 소유한 부동산	2
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	
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	
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	
설세를, 마을회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	
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을 <u>2022년 12월 31일</u>	<u>2032년 12월 31일</u>
까지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	

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u>.</u>